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며,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안 제11조의2 신설)

-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2) 국방·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로서 분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 4)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 5)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

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기업규제 개선(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1000 m² 이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에 한하여 설치하는 공사

4.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
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별표 1 제1호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술인력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의 기계 분야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 나목 중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3만 m²(공장의 경우에는 1만 m²)”로 하며, 같은 호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의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 나목 중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3만 m²(공장의 경우에는 1만 m²)”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3년”을 “3 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 분야의 기술인력의 자본금(자산평가액)의 영업범위란 가목 중 “1만제곱미터”를 “1만 m²”로 하며, 같은 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의 자본금(자산평가액)의 영업범위란 가목 중 “1만제곱미터”를 “1만 m²”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의 기계 분야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 가목 중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3만 m²(공장의

경우에는 1만 m²)”로 하며, 같은 호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의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 가목 중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를 “3만 m²(공장의 경우에는 1만 m²)”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 중 “200℃”를 “200 ℃”로 한다.

나. 감압설비(300 mmHg 이하) 및 가압설비[700 kPa {7 kgf/cm²} 이상] 별표 1 제4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 중 “1분”을 “1 분”으로 하고, 같은 호 섬유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 제2호 중 “107℃”를 “107 ℃”로, “1℃”를 “1 ℃”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36cm”를 “36 cm”로 하고, 같은 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시험기기란 제2호 중 “42℃”를 “42 ℃”로, “1℃”를 “1 ℃”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36cm”를 “36 cm”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같은”을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u> <u>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u> <u>3.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1000 m² 이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누</u>

<u>제11조의2 · 제11조의3</u> (생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2.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u>전정보기, 가스누설정보기, 시각정보기, 피난구조설비에 한하여 설치하는 공사</u> 4. <u>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이외의 소방시설공사</u> 5. <u>문화재 수리, 재개발 · 재건축 등 공사의 성질상 또는 특성상 분리도급이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u>제11조의3 · 제11조의4</u> (현행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과 같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7